

의안번호	제 351 호
의 결 연 월 일	2009년 4월 일 (제 279회)

**충청북도자연학습원 운영 및 위탁관리에 관한  
조례 일부개정조례안**

발 의 자	이범윤 의원외 7인
발의연월일	2009년 4월 15일

# 충청북도자연학습원 운영 및 위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이범윤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351
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2009. 4. 15.  
제 출 자 : 이범윤, 임 현, 최미애,  
김광수, 이종호, 정윤숙,  
최광옥, 최재옥

## 1. 제안이유

- 자연학습원 이용과 관련하여 현실에 맞는 “시설사용료 및 연수비” 기준을 마련하여함으로써 자연학습원 운영의 내실화와 이용수준을 향상하고, 「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」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시설사용료 및 연수비 현실화(안 제10조의 별표)

- 숙박비 및 연수비

(단위 : 1인당/원)

구 분	개정전			개정후				비 고
	숙박비	연수비	계	숙박비	연수비	계	인상율	
초등학생	4,700	8,400	13,100	4,700	<b>9,900</b>	14,600	11.5%	식대는 별도징수
중 학 생	5,000	8,500	13,500	5,000	<b>10,000</b>	15,000	11.1%	
고·대학생	5,300	8,600	13,900	5,300	<b>10,100</b>	15,400	10.8%	
일 반 인	8,000	9,000	17,000	8,000	<b>10,500</b>	18,500	8.8%	

※ 숙박비는 변동 없음.

- 「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」에 따라 용어정비

- 3. 의안전문 : 붙임
- 4. 신·구조문 대비표 : 붙임
- 5. 관계법령 발취 : 붙임

충청북도 조례 제 호

**충청북도자연학습원 운영 및 위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**

충청북도자연학습원 운영 및 위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 중 “의하여”를 “따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호 “자체교육 또는”을 “자체교육과”로 하며, 같은 조 제3호 중 “법인 또는”을 “법인과”로 한다.

제3조 본문 중 “학습원”을 “충청북도자연학습원(이하 “학습원”이라 한다)”로 한다.

제4조 본문 중 “한하여”를 “한정하여”로 한다.

제5조 본문 중 “수립시”를 “수립 시”로 한다.

제6조제1항 중 “있는 자 또는”을 “있는 자와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하

는 자 및“을 “하는 자와“로 하며, “의한“을 “따른“으로 하고, 같은 조 제 4항 중 “의하여 당해“를 “따라 해당“으로 한다.

제8조 본문 중 “범위안에서“를 “범위에서“로 하며, “의하여“를 “따라“로 한다.

제9조제2항 중 “의한“을 “따른“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의하여“를 “따라“로 하며, “통지하여야“를 “알려야“로 한다.

제10조 본문 중 “연수 또는“을 “연수와“로 하고, “사용료 및 연수비 또는“을 “사용료와 연수비,“로 하며,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제11조제2호 중 “공공 또는 공익목적“을 “공공·공공목적“으로 한다.

제12조제1항 중 “일부 또는“을 “일부나“로 하고, “공공기관이나 비영리법인 또는“을 “공공기관, 비영리법인,“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“제1에“를 “제1항에“로 하고, “하며,“를 “하되,“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“단체 또는“을 “단체,“로 한다.

제13조제2항 중 “처분 또는“을 “처분,“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제2의“를 “제2항에“로 하며, “기부채납 하여야“를 “기부채납하여야“로 한다.

제14조 본문 중 “이용자 또는“을 “이용자,“로 하고, “고의 또는“을 “고의나“로 하며, “원상복구 또는“을 “원상복구하거나“로 한다.

제15조제1항 중 “또한 같다“를 “같다“로 한다.

제16조 본문 중 “하나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”을 “**하나에 해당할 때에는**”으로 한다.

제17조제1항 중 “수탁관리자에 대하여”를 “**수탁관리자에게**”로 하고, “위법 또는”을 “**위법,**”으로 하며, “정 지 또는”을 “**정지,**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제1에 따라 당해”를 “**제1항에 따라 해당**”으로 하고, “취소 또는”을 “**취소하거나**”로 하며, “통보하고”를 “**알리고**”로 한다.

제1조 본문, 제4조 본문, 같은 조 제1호, 같은 조 제3호, 제5조제1호, 같은 조 제2호, 제6조제1항제2호, 같은 항 제3호, 같은 조 제3항, 제12조제4항, 제15조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 중 “및”을 각각 앞 단어와 붙여서 “**과**”로 한다.

제4조제4호, 제5조3호, 제6조제1항제4호, 제11조제2호 및 제16조제4호 중 “기타”를 각각 “**그 밖에**”로 한다.

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### 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당시 시설사용 또는 연수중인 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[별표]

**시설사용료 및 연수비** (제10조 관련)

## □ 시설사용료 및 연수비

(단위 : 1인당/원)

구 분	숙박 (1일)	연수 (1일)	비 고
초 등 학 생	4,700	9,900	식대는 별도 징수
중 학 생	5,000	10,000	
고 · 대학생	5,300	10,100	
일 반 인	8,000	10,500	

※ 연수 1일은 3식을 기준으로 함

## □ 단순 시설사용자 사용료

(단위 : 원)

시 설 명	사용기준	사용료	비 고
숙 박 실	일반실/1박/1인	8,000	18인용/23실
강 의 실	1실/시간	10,000	1실/150석
대 강 당	1실/시간	10,000	1실/300석
운 동 장	1면/시간	10,000	1면
잔디운동장	1면/시간	10,000	3면
야 영 장	1면/1박(텐트설치면적 9 m)	10,000	1,637㎡

## 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충청북도자연학습원의 운영 및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"연수생"이란 충청북도자연학습원(이하 "학습원"이라 한다)에서 운영하는 수련프로그램에 의하여 교육을 받는 자를 말한다.</li> <li>2. "시설사용"이란 학습원에서 <u>자체교육</u> 또는 연수를 위하여 시설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.</li> <li>3. "청소년단체"란 「청소년기본법」 제3조제8호에 따른 <u>법인</u> 또는 단체를 말한다.</li> <li>4. "사용료"란 학습원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.</li> </ol> <p>제3조(위치) 학습원은 괴산군 청천면 송면리에 둔다.</p> <p>제4조(시설사용) 학습원은 자연학습 및 체력단련 등을 할 수 있는 자연권 수련시설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 해당하는 경우에 <u>한하연</u>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.</p>	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충청북도자연학습원의 운영<u>과</u>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"연수생"이란 충청북도자연학습원(이하 "학습원"이라 한다)에서 운영하는 수련프로그램에 <u>따라</u> 교육을 받는 자를 말한다.</li> <li>2. "시설사용"이란 학습원에서 <u>자체교육과</u> 연수를 위하여 시설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.</li> <li>3. "청소년단체"란 「청소년기본법」 제3조제8호에 따른 <u>법인과</u> 단체를 말한다.</li> <li>4. "사용료"란 학습원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.</li> </ol> <p>제3조(위치) <u>충청북도자연학습원(이하 "학습원"이라 한다)</u>은 괴산군 청천면 송면리에 둔다.</p> <p>제4조(시설사용) 학습원은 자연학습 <u>과</u> 체력단련 등을 할 수 있는 자연권 수련시설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 해당하는 경우에 <u>한정하여</u>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.</p>

현행	개정안
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자연학습 및 환경보호에 관한 교육</li> <li>2. 청소년 수련활동 등 단체훈련을 통한 심신단련</li> <li>3. 애향·애국심 및 민주시민 정신 고취를 위한 교양강좌</li> <li>4. 기타 도민을 위한 교육 등</li> </ol>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자연학습과 환경보호에 관한 교육</li> <li>2. 청소년 수련활동 등 단체훈련을 통한 심신단련</li> <li>3. 애향·애국심과 민주시민 정신 고취를 위한 교양강좌</li> <li>4. <u>그 밖에</u> 도민을 위한 교육 등</li> </ol>
<p>제5조(운영계획) 충청북도지사(이하 “도지사”라 한다)는 매년 학습원의 교육운영계획 수립시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교육일정 및 교육방법</li> <li>2. 교육과정 및 교육과목</li> <li>3. 기타 교육운영에 필요한 사항</li> </ol>	<p>제5조(운영계획) 충청북도지사(이하 “도지사”라 한다)는 매년 학습원의 교육운영계획 수립시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교육일정과 교육방법</li> <li>2. 교육과정과 교육과목</li> <li>3. <u>그 밖에</u> 교육운영에 필요한 사항</li> </ol>
<p>제6조(연수신청)</p> <p>① 연수를 신청할 수 있는 자 또는 기관·단체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학생</li> <li>2. 청소년 단체 회원 및 임직원</li> <li>3. 일반 직장인 및 사회 단체 임직원</li> <li>4. 기타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</li> </ol> <p>② 제1항에 따라 연수를 받고자 하는 자 및 기관·단체에서는 교육개시 10일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</p>	<p>제6조(연수신청)</p> <p>① 연수를 신청할 수 있는 자와 기관·단체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학생</li> <li>2. 청소년 단체 회원과 임직원</li> <li>3. 일반 직장인과 사회 단체 임직원</li> <li>4. <u>그 밖에</u>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</li> </ol> <p>② 제1항에 따라 연수를 받고자 하는 자와 기관·단체에서는 교육개시 10일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</p>

현행	개정안
<p>에 의한 연수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</p> <p>③ 도지사는 각급 기관 및 단체에서 30명 이상의 인원이 중복신청을 한 경우 수용능력을 감안하여 시기 등을 협의 조정할 수 있다.</p> <p>④ 도지사는 제2항의 신청서를 검토하고 연수대상자로 결정 또는 제3항의 중복신청을 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당해 신청자에게 조정결과 또는 결정통지를 하여야 한다.</p>	<p>에 <b>따른</b> 연수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</p> <p>③ 도지사는 각급 기관<b>과</b> 단체에서 30명 이상의 인원이 중복신청을 한 경우 수용능력을 감안하여 시기 등을 협의 조정할 수 있다.</p> <p>④ 도지사는 제2항의 신청서를 검토하고 연수대상자로 결정 또는 제3항의 중복신청을 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<b>따라 해당</b> 신청자에게 조정결과 또는 결정통지를 하여야 한다.</p>
<p>제8조(외래강사수당) 외래강사를 초빙한 경우 예산의 <u>범위안에서</u>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 다만 연수기관 <u>또는</u> 단체의 자체 계획에 <u>의하여</u> 외래강사를 초빙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p>	<p>제8조(외래강사수당) 외래강사를 초빙한 경우 예산의 <b>범위에서</b>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 다만 연수기관<b>과</b> 단체의 자체 계획에 <b>따라</b> 외래강사를 초빙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p>
<p>제9조(시설사용신청) ① 학습원에서 자연학습, 심신단련, 교양강좌 등을 위하여 시설사용신청을 한 기관·단체에게는 제반시설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. 이 경우 학습원의 운영방침을 준수하여야 한다.</p> <p>② 제1항에 따라 학습원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시설사용신청서를 도지사</p>	<p>제9조(시설사용신청) ① 학습원에서 자연학습, 심신단련, 교양강좌 등을 위하여 시설사용신청을 한 기관·단체에게는 제반시설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. 이 경우 학습원의 운영방침을 준수하여야 한다.</p> <p>② 제1항에 따라 학습원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<b>따른</b> 시설사용신청서를 도지사</p>

현행	개정안
<p>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</p> <p>③ 도지사는 제2항의 시설사용신청서를 검토하고 시설사용 대상으로 결정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서식에 <u>의하여</u> 시설사용결정통지서를 신청자에게 <u>통지하여야</u> 한다.</p> <p>제10조(시설사용료 등) <u>연수 또는</u> 시설사용 신청으로 학습원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에서 정한 <u>시설사용료 및 연수비</u> 또는 <u>단순 시설사용자 사용료를</u> 납부하여야 한다.</p> <p>제11조(시설사용료 감면)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할 경우</li> <li>2. <u>기타 공공 또는 공익목적</u>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</li> </ol> <p>제12조(관리·운영의 위탁) ① 도지사는 학습원의 효율적인 관리·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리·운영의 <u>일부 또는</u> 전부를 자연학습 및 교육과 관련이 있는 <u>공공기관이나 비영리법인</u> 또</p>	<p>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</p> <p>③ 도지사는 제2항의 시설사용신청서를 검토하고 시설사용 대상으로 결정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서식에 <b>따라</b> 시설사용결정통지서를 신청자에게 <b>알려야</b> 한다.</p> <p>제10조(시설사용료 등) <b>연수와</b> 시설사용 신청으로 학습원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에서 정한 <b>시설사용료와 연수비</b>, 단순 시설사용자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.</p> <p>제11조(시설사용료 감면)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국가기관<b>과</b>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할 경우</li> <li>2. <b>그 밖에 공공·공익목적</b>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</li> </ol> <p>제12조(관리·운영의 위탁) ① 도지사는 학습원의 효율적인 관리·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리·운영의 <b>일부나</b> 전부를 자연학습 및 교육과 관련이 있는 <b>공공기관, 비영리법인</b>, 청소년</p>

현행	개정안
<p>는 청소년단체 등(이하 “수탁관리자”라한다)에 학습원 관리·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.</p> <p>② 제1에 따라 관리·운영을 위탁할 경우 그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, 필요한 경우 3년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</p> <p>③ 수탁관리자는 위탁받은 학습원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다른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재위탁하거나 대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.</p> <p>④ 도지사는 학습원의 관리·운영을 위탁할 때에는 운영 및 시설개보수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.</p>	<p>단체 등(이하 “수탁관리자”라한다)에 학습원 관리·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.</p> <p>② 제1항에 따라 관리·운영을 위탁할 경우 그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, 필요한 경우 3년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</p> <p>③ 수탁관리자는 위탁받은 학습원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다른 법인이나 단체, 개인에게 재위탁하거나 대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.</p> <p>④ 도지사는 학습원의 관리·운영을 위탁할 때에는 운영과 시설개보수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.</p>
<p>제13조(재산의 관리)</p> <p>① 수탁관리자는 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, 관리하는 재산은 학습원 운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.</p> <p>② 수탁관리자가 학습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 또는 구조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</p> <p>③ 제2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은 취득과 동시에 도지사에게 기부체</p>	<p>제13조(재산의 관리)</p> <p>① 수탁관리자는 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, 관리하는 재산은 학습원 운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.</p> <p>② 수탁관리자가 학습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, 구조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</p> <p>③ 제2항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은 취득과 동시에 도지사에게 기</p>

현행	개정안
<p>납하여야 하고, 건물을 구조변경할 때에는 수탁관리자의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.</p>	<p><b>부채납하여야</b> 하고, 건물을 구조변경할 때에는 수탁관리자의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.</p>
<p>제14조(시설변상책임) 연수생, 시설이용자 또는 수탁관리자가 <u>고의 또는 과실로</u> 학습시설이나 비품을 파손·망실하였을 경우는 <u>원상복구 또는 변상</u>하여야 한다.</p>	<p>제14조(시설변상책임) 연수생, 시설<b>이용자</b>, 수탁관리자가 <b>고의나 과실로</b> 학습시설이나 비품을 파손·망실하였을 경우는 <b>원상복구하거나</b> 변상하여야 한다.</p>
<p>제15조(예산 및 결산)</p> <p>① 수탁관리자는 학습원의 익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 20일전까지 도지사에게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<u>또한 같다</u>.</p> <p>② 수탁관리자는 매 회계연도 종료후 2개월 이내에 수탁업무에 대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결산 보고를 하여야 한다.</p>	<p>제15조(예산<b>과</b> 결산)</p> <p>① 수탁관리자는 학습원의 익년도 사업계획<b>과</b> 예산서를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 20일전까지 도지사에게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<u>같다</u>.</p> <p>② 수탁관리자는 매 회계연도 종료후 2개월 이내에 수탁업무에 대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결산 보고를 하여야 한다.</p>
<p>제16조(위탁계약의 취소) 도지사는 수탁관리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 <u>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</u>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학습원의 유지관리 업무를 소홀히 하여 재산상 중대한 손해가 발생 하였을 때</li> <li>2. 학습원의 시설목적에 위반한 사업을 운영하였을 때</li> </ol>	<p>제16조(위탁계약의 취소) 도지사는 수탁관리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<b>하나에 해당할 때</b>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학습원의 유지관리 업무를 소홀히 하여 재산상 중대한 손해가 발생 하였을 때</li> <li>2. 학습원의 시설목적에 위반한 사업을 운영하였을 때</li> </ol>

현 행	개 정 안
<p>3. 위탁관리 협약을 위반하였을 때 4. <u>기타</u> 행정명령이나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</p> <p>제17조(지도·감독) ① 도지사는 학습원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관리자를 지도·감독하며,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<u>수탁관리자에 대하여</u>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<u>위법 또는</u>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<u>정지 또는</u> 시정시킬 수 있다. ② 도지사는 수탁관리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연 1회 이상 정기감사를 실시하도록 하되 필요시 수시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. ③ 도지사는 <u>제1에 따라</u> 당해 사무를 <u>취소 또는</u> 정지시키고자 할 때에는 그 취소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관리자에게 <u>통보하고</u>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.</p>	<p>3. 위탁관리 협약을 위반하였을 때 4. <u>그 밖에</u> 행정명령이나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</p> <p>제17조(지도·감독) ① 도지사는 학습원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관리자를 지도·감독하며,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<u>수탁관리자에게</u>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<u>위법,</u>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<u>정지,</u> 시정시킬 수 있다. ② 도지사는 수탁관리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연 1회 이상 정기감사를 실시하도록 하되 필요시 수시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. ③ 도지사는 <u>제1항에 따라 해당</u> 사무를 <u>취소하거나</u> 정지시키고자 할 때에는 그 취소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관리자에게 <u>알리고</u>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.</p>

## 관련법령 발췌

### □ 지방자치법

**제22조(조례)**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

### □ 청소년활동진흥법

**제24조(이용료 및 수련비용)** ①수련시설을 설치·운영하는 자 및 위탁운영단체는 수련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